

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
	(전화번호 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공제세액 계 (=④+⑤)	
-----------------	--

④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(= ⑧ + ⑨)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1. 기본공제금액 (=⑧)				⑧
법인 구분	지역 구분	⑥ 투자금액	⑦ 공제율	⑧ 공제세액(=⑥×⑦)
중소기업	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		3%	
중견기업	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		1%	
	수도권 밖		2%	
	계			

2. 추가공제금액(⑫와 ⑳ 중 작은 수)				⑨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-

1)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					
법인 구분	지역 구분	서비스업 여부	⑩ 투자금액	⑪ 공제율	⑫ 공제세액(=⑩×⑪)
중소기업	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	여		7%(5%)	
		부		6%(4%)	
	수도권 밖	여		8%(6%)	
		부		7%(5%)	
	계				
중견기업	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	여		6%(5%)	
		부		5%(4%)	
	수도권 밖	여		7%(6%)	
		부		6%(5%)	
	계				
일반기업	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	여		4%	
		부		3%	
	수도권 밖	여		5%	
		부		4%	
	계				

2) 상시근로자 수 계산															
구 분	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⑬ 합계	⑭ 개월수	⑮ 상시 근로자수 (=⑬÷⑭)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	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
직전 과세연도															

3)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				
고 용 증 가 인 원 에 따 른 공 제 한 도	⑯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		⑰ 1명당 공제금액	⑱ 공제한도 (=⑯×⑰)
	⑲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		
	⑳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		
	㉑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 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(다만, ㉑≤⑲-⑳)		2천만원 (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)	㉒
	㉒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(다만, ㉒≤⑲ -㉑-㉑)		1천 5백만원 (중소기업은 2천만원)	㉓
	㉓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(= ⑲-⑳-㉑-㉒)		1천만원 (중소기업은 1천5백만원)	㉔

②7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(=④3)	
②8 추가공제한도 계(=②4+②5+②6-②7)	
※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(①2-②8와 0 중 큰 수)	②9

⑤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

고 용 증 가 인 원 에 따 른 공 제 한 도	③0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		③1 1명당 공제금액	③2 공제한도 (=③0×③1)
	③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		
	③4 다음 ㉠~㉢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			
	㉠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		
	㉡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		
	㉢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(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)의 상시근로자 수			
	③5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 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(다만, ③5≤③3-③4)		2천만원 (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)	③8
	③6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 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(다만, ③6≤③3-③4- ③5)		1천 5백만원 (중소기업은 2천만원)	③9
	③7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(= ③3-③4-③5-③6)		1천만원 (중소기업은 1천5백만원)	④0
	④1 이월공제 한도 계 (= ③8+③9+④0)			
	④2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			
	④3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(④1과 ④2 중 작은 수)			

⑥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

④4 과세연도	발생액			감소 내용			잔액		
	④5 미공제분	④6 납부분	④7 계	④8 기공제액	④9 당기공제액	⑤0 계	⑤1 기한 내	⑤2 기한 경과	⑤3 계
합 계									

⑦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

⑤4 추가공제(이월공제 포함)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
⑤5 상시근로자 수가 ⑤4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
⑤6 상시근로자 수가 ⑤4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 수	
⑤7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[(⑤4-⑤5) + (⑤5-⑤6)]	
⑤8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(⑤7×1천만원)	
⑤9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(이월공제세액 포함)의 합계액	
⑥0 납부 세액(⑤8과 ⑤9 중 작은 수)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.5명으로 계산하되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.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,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2.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3.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,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, 해당 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.
4. ⑪ () 공제율은 2017.4.17. 까지 투자분에 적용합니다.
5. ⑬란의 합계는 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.
6. ⑭란의 개월수는 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.
7. ⑳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,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⑨)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㉑)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.
8. ㉒란의 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,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⑨)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㉑)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(㉓)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.
9. "㉗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"란은 "㉘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"란에 옮겨 적습니다.
10. "※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"은 해당 과세연도의 "㉙ 미공제분"란에 옮겨 적습니다.
11. ㉚란의 "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"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,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㉚)에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(㉜)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.
12. ㉞란의 "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"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(㉞)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,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(㉚)에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(㉜)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(㉞)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.
13. ㉟란부터 ㉛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.
14. "㉜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"란의 금액은 "㉝ 계"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.
15. "㉞ 납부분"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(고용 감소로 인하여 ㉟란부터 ㉛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)을 말합니다.